

장기미집행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 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3개월	
토지소유자	① 성명(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)		② 생년월일 (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)	
	③ 주소 (우) (전화번호:)			
토지에 관한 사항	④ 위치	⑤ 면적(㎡)	⑥ 지번	
도시·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	구분	⑦ 시설명	⑧ 편입면적(㎡)	⑨ 결정시기
	현황			
	구분	⑩ 실시계획인가일	⑪ 실효시기	⑫ 단계별 집행계획상 집행시기
	현황			
해제입안 신청 사유				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의2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·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입안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귀하
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대상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작성 방법

- ⑦ 시설명란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적되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구분에 따른 시설명을 적어야 합니다.
예) 도로·공원·학교 등
- ⑧~⑩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처리 절차

